

서울특별시의회 속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김기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07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08일
발 의 자: 김기덕 의원(1명)
찬 성 자: 김 경, 김영철, 김원태,
민병주, 아이수루, 윤영희,
이상훈, 이원형, 이종태
의원(9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시민참여를 도모하고자, 의정백서, 홍보책자, 월간서울의회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나, 실제 시민의 의견이 전제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 이에 향후 주요 정책 결정 과정 등에서 시민의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체계적 홍보 체계 마련 구축 및 향후 속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의정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의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 다. 여론조사 범위 및 제외 대상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라. 여론조사 의뢰 및 시기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 마. 여론조사 선정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 바.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
- 사. 활용실적 제출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
- 아.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에 대해 규정함 (안 제11조)

자. 예산지원에 대해 규정함 (안 제12조)

차. 비밀준수에 대해 규정함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서울특별시의회 속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정활동 및 정책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론조사”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 공표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제 발굴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여론조사 범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또는 교육청의 주요 시책이나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제외 대상)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개별 또는 지역구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에 관한 사항
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사항

제7조(여론조사 의뢰 및 시기) 위원회 및 사무처는 조사개시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여론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사무처 여론조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여론조사 선정)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라 의뢰된 여론조사를 선정한다.

1. 여론조사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여론조사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여론조사 활용 가능성 등

제9조(여론조사 방법)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 전화 병행), 대인 또는 집단 면접조사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4. 우편조사
5. 그 밖에 의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조사 방법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론조사 시 질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
2. 특정 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

제10조(활용실적 제출) 여론조사를 실시한 위원회 및 사무처는 여론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 및 결과 공개여부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여론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여론조사 활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 여론조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여론조사 결과의 공개) ① 의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1. 여론조사 결과가 부적절하거나 입법활동 지원, 정책연구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여론조사 결과 공개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정치적인 파장 또는 시민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공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의원명) 및 사무처 부서명,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2. 조사기간, 방법, 질문내용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항

제12조(예산지원) 의장은 여론조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론조사 의뢰서

번호			
제목			
위원회·부서명		조사방법	
조사대상 (모집단)		조사규모 (표본수)	
조사시기		활용시기	
조사목적			
주요 조사내용			
조사결과 활용계획			
조사결과 언론보도 계획			
기타			

(신청 의원명: , 담당자:)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 또는 부서 여론조사 의뢰서를 제출함.
위원장 또는 부서장 0 0 0(서명 또는 날인)

여론조사 활용실적 보고서

번호						
제목						
위원회·부서명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규모 (표본 수)		
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목적						
주요 조사결과 (요약)						
조사결과 활용실적	조례 재·개정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언론보도	기타	공개여부
향후 활용 계획						
기타						

서울특별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은 제12조(예산지원)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의회사무처 언론홍보과)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5 서울특별시의회 시민 여론조사 운영 관련 예산 내역

사업명	예산액(천원)
시민 여론조사 운영	180,000

※자료: 2025 서울시 예산서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이설화
☎ 02-2180-7952
e-mail : sseol78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